

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

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,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.

| 1. 공사내용 | |
|---|--|
| 공사명 |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|
| 공사 장소(주소) |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54-5 |
| 공사의 종류 | 공동주택(V) 건축물() 도시철도() |
| 2. 건축주 제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항 | |
| 옥외안테나 설치장소 | 1.옥상층: 102동, 104동, 106동 |
| 중계장치 설치장소 | 1.옥상층: 102동, 104동, 106동 2.지하1층: 헨터(2개소) |
| 접지단자 위치 |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|
|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|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(총용량4kW 이상, 교류 220V, 단자 3개 이상) |
| 3. 공동주택(500세대 이상)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| |
|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| 입주자 모집 공고문 |
|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| |
| ※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,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. | |
| 4.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(변경)승인서 사본 1부 제공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(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)③ 건축물의 착공/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|
| 5.기타 협의사항 | "상세 협의 결과" 참조 |

※ 건축주는 “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”의 제 35조~39조를 준수하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※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,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
[첨부]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.

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"전기통신사업법", "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"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.

2025년 05월 19일

| 구분 | 법인/단체명(상호) | 대표자(성명)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건축주 | 한국자산신탁(주) | 김규철 |
| 대리인 | 하경이엔씨(주) | 류홍열 (인) 동의함 |

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
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
한국전파진흥원

상세 협의 결과

1.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

1.옥상층: 102동, 104동, 106동

2 중계장치 설치 위치

1.옥상층: 102동, 104동, 106동
2.지하1층: 훈룸(2개소)

3. 기타 협의사항

- 상호 협의결과서 제4항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
- 건축주등* 필수 보완사항 (홈페이지 "착공통보" 화면에 등록)
①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
② 정보통신 착공도면 1부
③ 착공예정일
④ 준공예정일
⑤ 공사요청일
⑥ 공사현장담당자 (이름, 연락처 등)

*건축주등 : 건축주 외 건축사, 건설사, 통신설계사, 시행사, 시공사 등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협의를 대표한 자

- 중계설비 설치시기 : 건축주 공사요청일 ~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에 설치를 하여야 함
※ 착공 후 준공예정일을 입력하지 않거나 준공에 임박하여 입력하는 경우, 이동통신사 중계설비의 공사물자 확보(최소5개월 소요)가 불가하여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.

- 아래 <<주의사항>>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<주의사항>>

- ※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[상호협의결과서](#) 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위치와 도면 상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"이동통신 구내중계 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"를 참고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이동통신설비 설계도서가 시공사(건설사)에게 반드시 전달되어, 건축물에 선로설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.
- ※ 공동주택 옥상에 중계장치/옥외안테나 설치 시, 전원접지단자를 옥상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